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수현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shlee@forest.or.kr

이현영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lhy716@forest.or.kr

이호연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hyun10204@forest.or.kr

김재형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hskim3133@forest.or.kr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연구책임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연구진

이현영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이호연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김재형 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목차

| 01 연구개요 | 1 |
|-----------------------------------|----|
| 1_연구 배경 | 1 |
| 2_연구 목적 | 8 |
| 3_연구 방법 | 8 |
| 02 문헌조사 | 10 |
| 1_국내외 관련 제도 및 지침 | 10 |
| 2_국내외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 사례 | 21 |
| 03 현장조사 | 32 |
| 1_시민인터뷰 | 32 |
| 2_공원 실태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38 |
| 3_공원 실태조사: 강서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40 |
| 04 정책제언 | 50 |
| 1_근란공원의 양적 확대 | 51 |
| 2_공원시설의 질적 개선 | 52 |
| 3_공원 이용 서비스의 확대 | 56 |
| 4_지발적 참여 독려 방안 모색 | 59 |
| 5_시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근란공원에 비라는 미래상 제안 | 61 |
| 참고문헌 | 64 |
| 부록: 강서구 근린공원 21개소 평가점수 | 66 |

표 목차

| [표 1-1] 서울시 도시공원 개소수 및 규모 | 3 |
|---|------|
| [표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 5 |
| [표 1-3]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연도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비교(2013, 2018) | 6 |
| [표 1-4] 연구 추진과정 | 9 |
| [표 2-1] 국외 관련 제도 | 12 |
| [표 2-2] 국내 관련 법령 및 지침 | 15 |
| [표 2-3]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 | 17 |
| [표 2-4]「건축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9 |
| [표 2-5]「공원녹지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0 |
| [표 2-6] 국내외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 사례 분석 | 30 |
| [표 3-1] 시민인터뷰 개요 | 32 |
| [표 3-2] 시민인터뷰 종합의견 | 37 |
| [표 3-3] 공원 실태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 38 |
| [표 3-4] 공원 실태조사 개요 | 40 |
| [표 3-5] 공원별 종합 점수표 | 40 |
| [표 3-6]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42 |
| [표 3-7] 규모별 공원 분류 | 43 |
| [표 3-8] 유형별 공원 분류 | 46 |
| [표 4-1] 서울시 연도별 공원 면적 | 51 |
| [표 4-2] 산지형 공원 산책로 구조 기준 | 54 |
| [표 4-3] 산지형 공원 산책로 노선배치 기준 | 55 |

| [표 4-4] 유사 인증 인센티브 현황 | 60 |
|------------------------------------|----|
| [표 4-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위한 종합방안 | 62 |

그림 목차

| [그림 1-1] 구글의 공동체 이동 보고서 | 2 |
|---|----|
| [그림 1-2] 코로나19 이후 공원 이용의 증가 | 2 |
| [그림 1-3] 코로나19 이후 이용공원 종류의 변화 | ۷ |
| [그림 1-4] 국내 교통약자 비율(전국 교통약자 비율, 서울시 교통약자 비율) | 6 |
| [그림 1-5] 7대 광역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도 | 7 |
| [그림 1-6] 공원 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의 상관관계 산점도 | 7 |
| [그림 1-7] 서울시 근린공원 면적 | 8 |
| [그림 1-8]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 8 |
| [그림 1-9] 서울시 강서구 근린공원의 영향권 현황(21개소) | S |
|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SGDs)의 11번 목표 | 10 |
| [그림 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16 |
| [그림 2-3]「건축법」과「공원녹지법」의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 | 18 |
| [그림 2-4] 일본 후레아이 정원(오이즈미 공원 지도, 후레아이 정원 설계도) | 21 |
| [그림 2-5] 후레아이 정원의 안내판(음성 안내판, 식물의 점자 안내판) | 22 |
| [그림 2-6] 오감활용 정원(식물을 먹어볼 수 있는 주방의 정원,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정원) | 22 |
| [그림 2-7] 후레아이 정원 평면도 | 22 |
| [그림 2-8] 미국 플러드 공원(평면도, 피크닉 공간) | 23 |
| [그림 2-9]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 23 |
| [그림 2-10]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한 남산 순환 나들길 정보 제공 | 25 |
| [그림 2-11] 남산공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체계(점자 안내판, 점자 유도블록) | 25 |

| [그림 | 2-12 |] 안산공원 무장애 자락길 | 26 |
|-----|------|---|----|
| [그림 | 2-13 |] 서울숲공원 안내 체계(점자 안내판, 보호자 동반 보행구간 안내판) | 27 |
| [그림 | 2-14 |] 서울숲공원 무장애 놀이터의 놀이시설 | 27 |
| [그림 | 2-15 | 보라매공원 무장애 친화길 | 28 |
| [그림 | 2-16 |] 부산시민공원 안내판(촉지도, 공원역사관 내 음성 안내판) | 29 |
| [그림 | _ | 유도블록 없이 넓게 펼쳐진 공원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워 5분 동안 기만히 서 있는 모습 | 33 |
| [그림 | 3-2] | 매일 이용하는 공원이었지만 안내판에 BF보행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됨 | 35 |
| [그림 | _ | (좌) 공원에 작은 턱이 보이자 당연한 듯 뒤돌아가는 모습 (우) 운동시설의 높이가 낮게 설치된 부분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기 불편 | 36 |
| [그림 | 3-4] | 공원별 종합 점수 그래프(산지형 공원은 알파벳 앞에 '산'을 붙임) | 41 |
| [그림 | 3-5] | 항목별 평균 점수 비교 | 42 |
| [그림 | 3-6] | 규모별 평균 점수 비교 | 43 |
| [그림 | 3-7] | 휴게시설_(좌)근린생활권 벤치 (우)도시지역권 벤치 | 44 |
| [그림 | 3-8] | 위생시설_(좌)근린생활권 화장실 (우)도시지역권 화장실 | 44 |
| [그림 | 3-9] | 안전 체계_(좌)옹벽 안쪽 비상벨을 설치한 모습 (우)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 | 45 |
| [그림 | 3-10 |] 주차장_(좌)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안 되어있는 모습 기타시설_(우)성인 남성이 서 있는 높이(180cm)에 딱 맞는 운동시설 | 45 |
| [그림 | 3-11 |] 유형별 평균 점수 비교 | 46 |
| [그림 | 3–12 | 이동공가 바단 꾸잣재로 위해 욱통북통하 사책기 | 47 |

| [그림 3-13] 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모습 | 47 |
|--|----|
| [그림 3-14] (좌)산A공원_자연을 보존하며 산책로를 조성한 모습 (우)산A공원_시각장애인 안내 촉지판을 설치한 핸드레일 | 48 |
| [그림 3-15] (좌)비상대피장소이지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모습 (우)산책로에 점자 유도블록이 없는 모습 | 49 |
| [그림 4-1] (좌)위생시설_산A공원의 높은 비상벨 위치 (우)위생시설_산C공원의 잠겨있는 다목적 화장실 | 52 |
| [그림 4-2] (좌)위생시설_남여공용 다목적 화장실을 사용하는 K공원 (우)위생시설_점자표시의 좋은 예인 N공원 | 53 |
| [그림 4-3] 기타시설_장애아동도 이용이 가능한 그네 | 53 |
| [그림 4-4] 정보 접근성_해당 공원은 무장애 숲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56 |
| [그림 4-5] 고속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 57 |
| [그림 4-6]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공원의 대체 서비스 | 58 |

1

01.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1) 코로나19, 공원에 대한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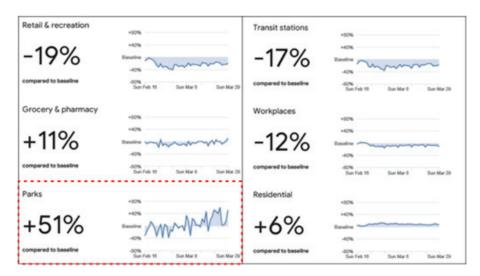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이후 2020년 1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으로 인해 3월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언택트(Untact 또는 비대면)와 온라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무실과 학교로 향하는 대신 집에서 비대면 회의와 원격수업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구매는 온라인으로, 영화관 대신 스트리밍과 VOD의 이용으로 일상의 풍경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 거리두기에 따른 고독감,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코로나 블루)을 40.7%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감염확산에 따른 건강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최근 구글(Google)에서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¹⁾ 해당 기간 동안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시설 방문율은 기존 대비 19%가 감소하였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환승지는 17%, 직장은 12% 감소하였다. 반면, 공원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방문율은 51%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식료품점이나 농수산물 직판장, 약국 등은 11%, 주거지는 6% 증기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공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변화된 시대(포스트 코로나)에 시민들이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림 1-1] 구글의 공동체 이동 보고서

출처: 구글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홈페이지(www.google.com/covid19/mobility)



[그림 1-2] 코로나19 이후 공원 이용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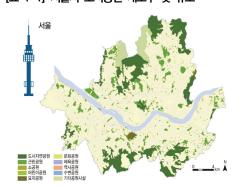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101460667)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52247015554)

2) 공원, 선택이 아닌 필수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뜻하는 공공재로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Konijnendijk et al.(2013; 김용국, 2014에서 재인용)은 2000년 이후 출판된 225개의 문헌 연구를 통해 현대 도시공원의 편익을 크게 생물 다양성, 주택가격, 건강 및 웰빙, 냉각 효과, 대기질 및 탄소 격리, 물 관리, 관광, 사회적 통합 등 8가지로 보았다. 또한, 건강 불평등 개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상호작용 증진, 환경 불평등 개선 등 도시 포용성을 제고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등 도시공원의 존재는 도시 회복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도시공원과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으로 구분되며, 생활권 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표 1-1]과 같이 서울시 도시공원을 살펴보면 총 2,214개소로 전체면적은 115.4km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면적 중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대모산과 우면산, 반포공원이 있는 서초구(15km), 불암산, 초안산이 있는 노원구(13km), 관악산이 있는 관악구(10.9km) 순으로 넓은 도시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1-1] 서울시 도시공원 개소수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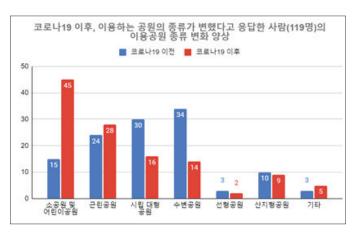


| 구분 | 개소 | 규모(천㎡) |
|--------|-------|---------|
| 합계 | 2,214 | 115,481 |
| 소공원 | 412 | 617 |
| 어린이공원 | 1,262 | 2,194 |
| 근린공원 | 407 | 45,438 |
| 도시자연공원 | 20 | 63,101 |
| 체육공원 | 6 | 183 |
| 묘지공원 | 4 | 2,378 |
| 문화공원 | 59 | 766 |
| 역사공원 | 19 | 49 |
| 수변공원 | 14 | 227 |

출처: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http://data.si.re.kr)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공간을 피하는 동시에 생활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규모의 공원과 산보다는 집과 가까운 중·소규모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3]의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수변공원, 시립 대형공원'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소공원 및 어린이공

원, 근린공원'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의숲, 2020). 이외에도 숲세권, 공세권, 공품아와 같이 공원과 관련된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생활권에서 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1-3] 코로나19 이후 이용공원 종류의 변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연구원은 '감염병이 도시구조에 던지는 과제' 연구를 통해 미래의 서울은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업무, 여가 등 생활권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상에서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선형공원 및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여 그린 인프라를 확보해야 함을 뜻한다.

3) 공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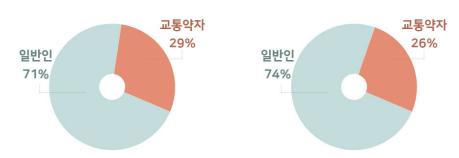
앞서 공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까? 공원 이용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이동권이라 하는데, 교통부문에서는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이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
| 고령자 | ○ 고령화사회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함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기준으로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음 |
| 어린이, 영유아 | ○ 「영유이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이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함 ○ 어린이는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을 의미함 |
| 일시적 교통약자 | ○ 임산부, 환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무거운 짐을 든 자 |

그렇다면 국내 교통약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 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교통약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으로 그중고령자는 과반수(52.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약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라는 뜻이다.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교통약자는 261만 명으로 전체인구(972만 명)의 26.8%를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5년간 서울의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자를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수는 연평균 2.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약 없이 물리적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1-4] 국내 교통약자 비율(전국 교통약자 비율, 서울시 교통약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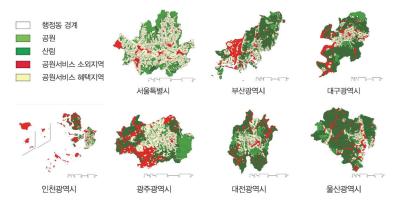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22개 유형 중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보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각각 11.0%, 13.5% 증가하였으나, 2018년 공원의 편의시설(설 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은 전체 평균(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연도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비교(2013, 2018)

| 편의시설 종류 | | 2013년 | | 2018년 | |
|---------|-----------|-------|-------|-------|-------|
| |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 | 주 출입구 접근로 | 91.5% | 84.4% | 96.6% | 91.8% |
| 매개시설 | 장애인주차구역 | - | _ | 58.4% | 50.1% |
| | 높이 차이 제거 | - | _ | 88.1% | 86.9% |
| OLLULA | 일반사항 | 45.6% | 40.2% | 32.3% | 28.7% |
| | 대변기 | 28.6% | 22.4% | 71.9% | 63.9% |
| 위생시설 | 소변기 | - | _ | 85.6% | 83.7% |
| | 세면대 | - | _ | 64.1% | 57.8% |
| 안내시설 | 유도 및 안내설비 | - | _ | 6.3% | 4.4% |
| | 접근로 점자블록 | _ | _ | 44.2% | 32.8% |
| 기타시설 | 매표소 등 | _ | _ | 70.6% | 62.7%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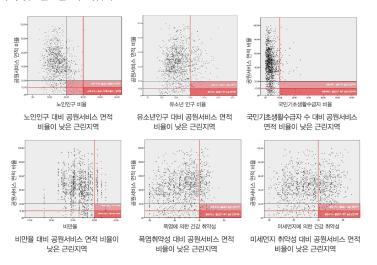
또한, 7대 광역시의 공원 서비스 수준과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근린 지역 가운데 공원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였다(김용국, 조상규, 2019).



[그림 1-5] 7대 광역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도

출처: 김용국, 조상규(2019)

아래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 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읍면동은 고령자, 유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만, 폭염 및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취약자의 공원 서비스 면적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공원 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의 상관관계 산점도

출처: 김용국, 조상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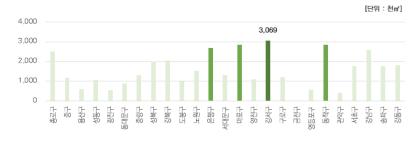
누구나 신체적 기능에 제약받지 않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 중심에서 가까운 근린공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누구나 질 높은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대상자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회적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필요 시설 및 서비스를 확인하고자한다. 또한, 공원 이용 사례담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고, 사회적 약자가 바라는 근린공원의 모습에 대해 듣고자한다. 최종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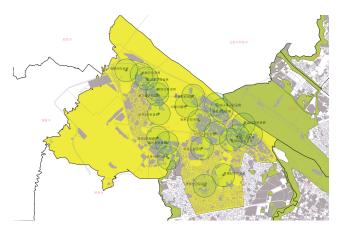
3 연구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생활 범위가 축소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중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중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강서구는 2019년 서울시 공원 통계에 따르면 근린공원 면적이 3,069천㎡로 가장 넓었으며, 공원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28,85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1-8]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이에 따라 서울시 강서구 근린공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선정하고, 총 23개소의 근린공원 중 2020년 기준 미시설 1개소와 현장 공사로 인해 평가가 불가한 1개소를 제외하고 21 개소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9] 서울시 강서구 근린공원의 영향권 현황(21개소)

첫 번째 단계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조사하고, 두 번째 단계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린공원 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누구나이용 가능한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4] 연구 추진과정

|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 법령 조사, 사례 문헌조사 | |
|---|-----------------------|--|
| • | • | |
| 체크리스트 제작 | 시민인터뷰, 체크리스트 제작 | |
| | 7 | |
| 근린공원 이용 현장조사 | 공원 실태조사 | |
| • | 7 | |
| 강서구 근린공원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자문 | |
| | 7 | |
|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 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도출 | |

02. 문헌조사

1_국내외 관련 제도 및 지침

1) 국외 관련 제도

(1) UN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건축 분야에서 무장애 디자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건축물, 공원, 보도 등의 턱을 제거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SGDs)의 11번 목표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1번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시설과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미국

무장애 관련 법규로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0)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의 권한을 제공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그 기준을 실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권 법이며, ADA의 설계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연방접근 규정)가 운영되고 있다.

ADA에서 특히 "제3장 공공시설" 부분에서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물의 제거 및 개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독일

1974년 무장애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이라는 콘셉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을 만들어 정보 접근권과 함께 물리적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해가고 있다.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전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4) 싱가포르

정부가 무장애 디자인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원 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BF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공원의 접근로 기준을 통합 평가하고 있으며, 공원 유지 및 관리 지표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 ▶ 사용자 중심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시설 유지 관리 방안
- ▶ 조경설계 등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계획
- ▶ 정기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 적용 방안
- ▶ 고용인의 운영 철학, 의사소통 체계,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시스템 구성
- ▶ UD 관련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 홍보
- ▶ UD 관련 교육자료의 시청각 시스템 적용 여부

(5) 일본

2006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배리어프리법) 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에서는 고령자, 장애인(신체장 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정신·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을 대상), 임산부, 부상자 등의 이동이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이나 안전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교통기관, 건축물,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모여있는 지구에 대해 중점적 및 일체적인 배리어프리화를 촉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 국외 관련 제도

| 구분 | 명칭 | 관련 내용 |
|---------------------------|---|--|
| United Nations (U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 11번 목표: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세부목표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
| 미국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 "총 5장으로 구성, "제3장 공공시설" 부분. 모든 공공시설의 신축, 개축구조물에 대해 장애인이 접 근 가능하도록 규정. (중략) 개조, 장애물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 대체적인 제공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해 야 함. 민간시설에도 적용" |
| 독일 | 장애인의 동등 취급에 관한 법 률(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 sgesetz, BGG) | ○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3조를 근거 조항으로 2002년 BF시설 의무화에 관한 연방법 제정○ 의무시설과 건축물, 기준에 관한 규정이 주마다 상이 |
| 싱기포르 | Universal Design Guide, Parks and Open Spaces | 정부기관(Universal Design Depart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BCA))의 주도하에 무장애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 무화 접근성 평가로 통합적으로 관리 |
| 일본 | 베리어프리(Barrier-free)법 | ○ 과거 하트 빌딩 법(건축물)과 교통 무장애법(건축물 이외의 시설)으로 나뉘어 있던 법령을 베리어프리 (Barrier-free)법으로 통합 ○ 고령화, 올림픽에 대비하여 법령에서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2) 국내 관련 제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1) 도시공원 관련 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공원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으로 구분한다. 국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에 해당하며 생활권 공원은 다시 소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되고 주제 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된다.

(2) 사회적 약자 관련 제도

1989년 장애인인구 및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편의시설'이라는 법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물리적 환경을 변화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2007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arrier Free, 이하 BF인증)'를 도입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을 검토하는 인증제도가 마련되었고, 2015년 「장애인편

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분야건축물은 의무적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원은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도 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하나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장 총칙). 특히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제7조),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있다.

[표 2-2] 국내 관련 법령 및 지침

| 구분 | 소관 부처 | 법령 | 관련 내용 |
|-----------|--|---|---|
|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공원녹지법) | ○ 제2조(정의): "도시공원"의 정의 |
| 법률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 ○ 제2조(정의): "교통약자"의 정의 |
| <u> </u> | 대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보건복자부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 | ○ 제2조(정의): "장애인 등"의 정의○ 제2조(정의): "공원"의 정의○ 제7조(대상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시행규칙 | 보건복자부· 국토교통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 한 규칙 | ○ 제2조(인증대상) ○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6조(인증의 신청) ○ 제7조(인증심사 등) ○ 제8조(인증기준 등) |
|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 료 기준 등 | ○ 제2조(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별표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 |
| 행정규칙 | 보건복자부 | (보건복자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심사가 준 및 수수료 가 준 등 | ○ 제2조(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별표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 |
| | 서울시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 성 기본 조례 | ○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
| 조례 | 서울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인증"의 범위, "장애인 등"의 정의 |
| | 서울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 ○ 제2조(정의): "무장애 도시" 정의,"개별시설" 정의, "무장애(BarrierFree)시설 인증" 정의 |
| 매뉴얼 | 서울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 공원편의시설(개요): 본 '공원 편의 시설 설치메뉴얼'은 장애인 편의시 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 치메뉴얼로 개발 등 |
| 가이드 라인 | 서울시 |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 ○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의 3대 원착: 접근성 지향, 보행 안전성 확 보, 포용력 확장 |
| | 서울시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철학: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서울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접근성과 안 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가로와 공원, 공공건축물 3가지 부문으로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적용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및 사례,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나,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림 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3)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관련된 과제는 없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공건축만 의무적으로 적용해왔으나 21년부터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포함한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인증제도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이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무장애 친화 공원 조성사업 및 '장애인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도시 서울' 5년 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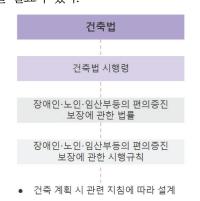
[표 2-3]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

| 구분 | 정책·사업명 관련 내용 | | |
|--------------------------------|--|---|--|
| 대한민국 (정부) | 100대 국정과제 | ○ 관련 과제 없음 | |
| 보건복지 위원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 안)- (공포) | ○ [의안 번호 2023143] 주요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 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 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시설에 대하여 본 인증 외 에 예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안 제10조의2제3항) 등 | |
| 21대 국회 (김원이 의원 등 15인 발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심사, 20.12.01 기준) | ○ [의안 번호 2237] 주요 내용 중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이하생략)" 등 | |
| 서울시 | 5개년 계획 (2018~2022) | ○ '장애인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도시 서울' 5개 세부 과제 중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 록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의사 소통 편의 증진, 주거지원 강화",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하는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장애인 돌봄 기족 지 원" 포함 | |
| 서울시 | 무장애 친화 공원 사업 (2015~현재) | ○ 무장애 친화 공원 가이드라인 중 (무장애 친화 공원 정의) "모두가 이용가능한 이라는 관점에서 (중략) 공 원 이용에 필수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인적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보완으로 이용객의 인전 확보와 불 편을 최소화한 공원" | |

(4) 「건축법」과 「공원녹지법」의 비교

「건축법」은 1985년부터 공공시설 접근권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였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이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개별적으로 건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2-4]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의 제5장 제24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제7장 제87조에서는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상세도를 참고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 시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은 어떠할까? [표 2-5]와 같이 「공원녹지법」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접근권,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각 제50조, 제9조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이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공원 접근권이 용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그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란공원 활성화를 위해 조성 및 이용 서비스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관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공원 조성계획시 지침에 따른 설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신설 공원에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 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법인 「공원녹지법」에서부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명시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법

• 조성 계획 시 지침에 따른 설계가 어려움

[그림 2-3] 「건축법」과 「공원녹지법」의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

[표 2-4]「건축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관련 시행규칙 |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 제6조(적용의 완화)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 건축법 관련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
| 별도 조한 없음 | 때른 기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 학원 ·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이동 관련 시설 · 노인복자시설 · 장애인 거주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이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 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제7장 건축물에 설치의 원칙)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란생활시설・제2종 근란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략시설 또는 관광휴 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집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3. 경사로의 작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나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
| | <u>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u> 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2.〉 | 할 것 | |

[표 2-5] 「공원녹지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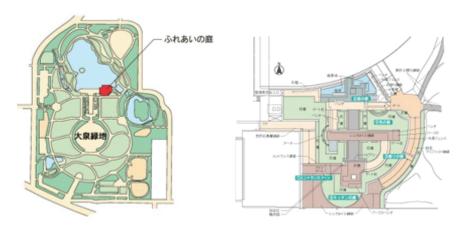
| 공원녹지법 | 공원녹지법 시행령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
|----------|--|---|--|
| | ○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
| 별도 조항 없음 |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③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 · 노약자 또 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 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 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국내외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원 시례

1) 국외 사례

(1) 일본 후레아이 정원(ふれあいの庭)2)

1997년 일본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정원으로 물리적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고려하였다. 오이즈미 공원에 위치한 후레아이 정원은 만남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색상, 소리, 향기, 감촉, 맛등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설계단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일반인 등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그림 2-4] 일본 후레아이 정원(오이즈미 공원 지도, 후레아이 정원 설계도)

출처: 유니버설디자인·컨소시엄 홈페이지(http://www.universal-design.co.jp)

또한, 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오이즈미 공원 홈페이지에서는 휠체어 대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오이즈미 공원 힐링 정원사 모임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에 공원 이용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²⁾ 위치: 오사카부 사카이시 오이즈미 공원 내 규모: 2,000㎡

〈오감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후레아이 정원〉

- ▶ 입구 영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 안내판과 음성안내 설치
- ▶ 주방의 정원: 만지고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계절별 허브, 아채 등이 심어진 정원
- ▶ 향기 정원: 계절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허브를 포함한 향기 식물이 심어진 정원
- ▶ 색상의 정원: 사계절의 다채로운 꽃 식재, 울타리 및 잔디와 조회를 이루도록 배색
- ▶ 소리의 정원: 수경 연못의 물, 수생 식물을 만지거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원





[그림 2-5] 후레아이 정원의 안내판(음성 안내판, 식물의 점자 안내판)





[그림 2-6] 오감활용 정원(식물을 먹어볼 수 있는 주방의 정원,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정원)

출처: 유니버설디자인·컨소시엄 홈페이지(http://www.universal-design.co.jp)



[그림 2-7] 후레아이 정원 평면도

출처: 오이즈미 공원 홈페이지(https://www.osaka-park.or.jp)

(2) 미국 플러드 공원(Flood park)³⁾

건강한 사람, 노약자, 장애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접근하기 쉬운 것을 테마로 계획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잔디밭, 피크닉장, 야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소프트볼장 등이 있다. 모두를 가까이하는 환경을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할 것, 물리적, 의료적으로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 모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독자성을 제공하는 것, 자연적인 경험이 가능한 접근로를 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원의 주요 특징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외래종 식물 제거, 서식지 복원, 기타공원 관리 등 개인, 그룹, 가족, 단체등 모든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샌머테이오 공원부 홈페이지에서 공원 내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확인할수 있다.



[그림 2-8] 미국 플러드 공원(평면도, 피크닉 공간)

| 용량 | BBQ | 문 | 전기 | 거리 | 테이뷴 | 장애 |
|------------|---------------|------------|------------|----------------|------------------|-----------------|
| # 착석 : 100 | 번호:4 | 가능 : 예 | 가능 : 예 | 주차 : 700 피트 | # 피크닉 : 12 | 접근 가능 : 아니오 |
| | 크기: 29 "x 17" | 거리 : 10 피트 | 거리 : 10 피트 | 늘이터 : 600 피트 | 피크닉 크기 : 3 'x 8' | 드라이브 : 아니오 |
| | 모양 : 직사각형 | 수도꼭지:1 | 아울렛 : 1 | 트레일:0 피트 | 피크닉 모양 : 직사각형 | 주차 : 700 피트 |
| | 연료 : 숯 | 분수:1 | 암페어 : 20 | 잔디 면적 : 20 피트 | # 서빙 : 3 | 트레일 : 아니오 |
| | | | | 화장실 : 210 피트 | 서빙 크기 : 3 'x 8' | 테이블 : 아니오 |
| | | | | 쓰레기 영역 : 10 피트 | 서빙 모양 : 직사각형 | 휴게실까지 : 700 ft. |

[그림 2-9]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출처: 샌머테이오 홈페이지(https://parks.smcgov.org/flood-park)

³⁾ 위치: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규모: 84,98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플러드 공원 이용 정보〉

- ▶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
- ▶ 차량 진입 가능 여부
- 주차장으로부터의 거리
- 전용도로 설치 여부
- ▶ 휠체어 이용자용 테이블 설치 여부
- ▶ 화장실까지의 거리
- ▶ 경사도 등

2) 국내 사례

(1) 남산공원4)

남산 순환 나들길은 원래 자동차가 다니던 남산 북측 순환로였으나 1991년 6월 서울시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휠체어, 유아차도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장애가 없는 산책로인 남산순환 나들길이 존재한다. 전체 9.1km 중 3.4km 구간이 장애가 없는 산책로로 이 구간은 특히 시각·지체·언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원이다. 서울시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장애 유형별 접근성, 이동 경로, 이용 가능한 시설뿐 아니라 관광지, 음식점, 숙박 등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10]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한 남산 순환 나들길 정보 제공



[그림 2-11] 남산공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체계(점자 안내판, 점자 유도블록)

출처: 서울시 복지포털 무장애관광코스(https://wis.seoul.go.kr/handicap/tour/route.do)

⁴⁾ 규모: 2,958,864m²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공원길 125-5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남산공원 이용 정보〉

- ▶ 장애인 전용 주차장(4개소)
- ▶ 남녀구분 화장실(2개소)
- ▶ 휠체어 대여 가능(10대)
- ▶ 유도블록 및 점자 안내판
- ▶ 난간손잡이
- ▶ 음성/위치 안내기 설치(16개소)
- ▶ 리모컨 대여 가능
- ▶ 공원 벤치 설치(30개)

(2) 안산공원5)

안산은 인왕산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무악재를 이루고 솟은 산아이다. 안산공원은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7km 길이의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이 있다. 안산의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물론 휠체어, 유아차도 아카시아숲, 메타세콰이어숲 등 다양한 숲길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역사적 명소도 관람할 수 있다. 남산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장애 유형별 접근성, 이동 경로, 이용 가능한 시설뿐 아니라 관광지, 음식점, 숙박 등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대문구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음성안내시설은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2-12] 안산공원 무장애 자락길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

⁵⁾ 규모: 1,156,498m²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34

(3) 서울숲공원6)

서울숲공원은 광역권 근린공원으로서 과거 임금의 사냥터로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다. 이후 경마장, 골프장으로 활용되기도 한 서울숲은 2002년 뚝섬 개발사업 대신 대규모 공원으로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5,000여 시민의 기금과 봉사로 2015년 도시숲으로 조성되었다. 문화예술공원, 체험학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네 가지의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된다.

서울숲의 주요 특징으로는 2012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첫 대상지, 무장 애 놀이터가 있다. 서울시의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2012년부터 2년간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 유형별 장애인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뚝섬역~서울숲' 전 구간 평면화, 유도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부착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무장애 놀이터를 만들고 2019년에는 서울숲공원 내 무장애 친화 공원을 조성하는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3] 서울숲공원 안내 체계(점자 안내판, 보호자 동반 보행 구간 안내판)





[그림 2-14] 서울숲공원 무장애 놀이터의 놀이시설

⁶⁾ 규모: 1,156,498㎡ 위치: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4) 보라매공원7)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 진입로 그대로 사용하여 일반인 접근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휠체어 및 유아차 등을 동반한 이용자는 긴 경사로로 인해 중간 부분에 쉼터가 요구되고 있다. 공원 내 촉지도, 음성안내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장실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다. 대부분의 공원시설은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무리가 없으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중앙바닥분수 및 개울 등은 진입로가 계단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BF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무장애 친화 공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접근성 개선,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5] 보라매공원 무장애 친회길

출처: 서은실, 구본학(2015)

⁷⁾ 규모: 424,106㎡ / 도시 지역권 근란공원 위치: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5) 부산시민공원⁸⁾

부산시민공원은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으로서 BF놀이시설, 참여의 정원 내 BF식재용 플랜트 설치, 문턱 없는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2014 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획득(2019년 2월 만료)했으나, 자연형 경지로 인해 본 인증에서는 승인받지 못한 특징이 있다.

일제 강점기 경마장과 군속훈련소로 사용되었고 1945년 광복 후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캠프하야리아)가 설치 운영된 공원으로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100년간의 역사를 담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라는 5가지 주제의 숲길을 조성하였다. 부산시민의 숲은 하이라인 설계자인 제임스 코너가 설계한 공원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넓고 평평한 산책로와 함께 점자, 음성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16] 부산시민공원 안내판(촉지도, 공원역사관 내 음성 안내판)

⁸⁾ 규모: 473,911㎡ 위치: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3) 종합 분석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물리적 개선이 어려울 시 시설 및 공간 정보, 현장 안내 등 서비스로 대체 방안을 제공하는 등 누구나 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내 사례에서는 모두 BF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위한 지자체 및 운영 주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규모 공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의 사례는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2-6] 국내외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 사례 분석

| 구분 | 공원명 | 주요 내용 및 의의 | | | | | | |
|----------------|---------|--|--|--|--|--|--|--|
| 국외 | 후레아이 정원 | 이용자, 관리자, 설계자가 함께 초기 계획부터 BF를 도입하여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조성 | | | | | | |
| 기 귀 | 플러드 파크 |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 | | | | | | |
| | 남산공원 | 점자 유도블록,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등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 | | | | |
| | 안산공원 | 산지형 공원 임에도 순환형 무장애길을 설치하여 유아차, 휠체어 이용인 접근 기능 | | | | | | |
| 국내 | 서울숲공원 | 인근 지하철역 주변의 평면화 및 공원 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놀이시설 도입 | | | | | | |
| | 보라매공원 | 공간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무장애 친화 공원이 되기 위해 지속해 서 노력 | | | | | | |
| | 부산시민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산책로, 화장실, 놀이공간 등 보완 | | | | | | |

공원은 모두를 위한 장소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공원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장애인전용주차장 유무, 주차장과 산책로의 연결 여부, 화장실 위치, 이용 가능한 시설물, 안내 체계, 경사로, 인근 음식점 등 이용인이 필요로 하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 및 공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원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용인이 참여하면 보다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공원설계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 어낼 수 있다. 기존의 조성된 공원은 공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개선이 어려울 때는 대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가 장애물로 인해 주거지에 인접한 근린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규모 공원을 찾아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물리적, 사회적 제약과 더불어 심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도록 근린공원부터 세심한 배려 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03. 현장조사

1_시민인터뷰

시민들이 원하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내 이용 가능한 공원은 어떠한 모습과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내가 꿈꾸는 근린공원의 모습'을 묻는 인터뷰를 통해 강서구 근린공원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노인과 유아차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섭외에 한계가 있어 공원 이용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3-1] 시민인터뷰 개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 강서구 근린공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연구 대상자 6인 ○ 시각장애인(2인), 휠체어 이용인(2인), 휠체어 이용인 보호자(1인), 느린 보행자(1인) |
| 모집 | ○ 서울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강서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인 추천 등으로 섭외 |
| 기간 | ○ 2020년 8월 중순 ~ 8월 말 |
| 방법 | ○ 대면 인터뷰 진행(120분 내외)○ 실내인터뷰와 공원 현장을 둘러보며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 |
| 내용 | ○ 공원 이용 현황 ○ 근린공원에서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 ○ 근린공원 개선시항 제안 |

1) 시각장애인(2인)

- 일시: 2020. 08. 18(화) 14:00~16:00
- 장소: 강서 시각장애인 쉼터, 허준 근린공원
- 대상: 시각장애 1급 & 60세(대나무⁹⁾), 시각장애 1급 & 45세(산세베리아)

"다른 곳들도 남산공원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좌우 안전 표시, 음향신호기, 유도시설, 점자** 안내도가 매우 잘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다닐 수 있거든요. 다른 곳들과는 달리 공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가기 때문에 가이드의 도움 없이 혼자 공원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어요."(대나무)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공원을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와 식물의 이름을 알고 싶지만, 대부분의 나무 이름표에는 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공원은 목표지점을 알 수 있는 점자 안내가 없는 곳이 많아요. 이런 불편함을 나열하기 전에 공원을 계획 할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산세베리아)



[그림 3-1] 유도블록 없이 넓게 펼쳐진 공원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워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모습

⁹⁾ 이름 대신 인터뷰이가 좋아하는 식물로 인터뷰이를 명명하였음

2) 휠체어 이용인 보호자(1인)

- 일시: 2020. 08. 21(금) 10:00~12:00
- 장소: 수명산 인근 카페, 수명산 근린공원
- 대상: 중증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 52세(목련)

"자녀의 재활 운동을 위해 일주일에 2~3번 집 근처 공원을 방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울퉁불퉁한 산책길뿐, 다른 운동시설은 높이나 속도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딸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철봉밖에 없더라고요. 또 외출할 때 돌발상행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동선을 미리 계획해서 가야 해요. 그래서 공원에 주차장이 있는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동선을 계획하지 않아도 외출할 수 있는 생활권 가까이의 공원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숲이 있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목련)

3) 느린 보행자(1인)

- 일시: 2020. 08. 21(금) 14:00~16:00

- 장소: 허준 근린공원

- 대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 사용이 불편한 느린 보행자 & 58세(장미)

"근무하는 직업 재활센터 바로 앞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매일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비해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핸드레일이 없는 계단을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계단 중간에 핸드레일만 설치되어 있어도, 저와 같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 아이들이 이용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재활센터에 방문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공원 내 운동시설이 무서워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장애인의 경우 헬스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재활 운동을 위해선 야외공간의 체육시설이 보완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벤치 같은 경우에 등받이가 없으면 다리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이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요. 저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다리에 무리가 빨리 와서 휠체어 대여 서비스가 있다면 무조건 이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원 이용하기 전에 안내판을 많이 보는 편인데 대부분 BF보행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찾기 어렵더라고요. 눈에 띄는 보행로 표시체계가 있다면 모두가 이용하기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요?"(장미)



[그림 3-2] 매일 이용하는 공원이었지만 안내판에 BF보행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됨

4) 휠체어 이용인(2인)

- 일시: 2020. 08. 28(금) 14:00~16:00
- 장소: 방화역 인근 카페, 방화 근린공원
- 대상: 지체 장애 1급 & 50대(프리지아), 지체 장애 2급 & 50대(수국)

"공원을 가기 전에 다목적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해보고 가요. 저와 같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동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또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거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운동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요즘 새로 생긴 공원들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괜찮은데 오래된 공원들은 시설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서 가기 어렵더라고요."(프리지아)

"저는 주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위주의 공원을 다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낀 경험은 없어요. 그럼에도 계단을 마주할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서 안내 체계 같은 것들이 잘 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나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수국)





[그림 3-3] (좌) 공원에 작은 턱이 보이자 당연한 듯 뒤돌아가는 모습 (우) 운동시설의 높이가 낮게 설치된 부분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기 불편

5) 인터뷰 종합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해 진행하였던 6인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3-2] 시민인터뷰 종합의견

| 구분 | 내용 |
|----------------|--|
| 시각장애인 | ○ 주요 시설물 주변으로 유도블록이 충분히 깔려있지 않아 유도블록 조차 찾기가 어려움 ○ 주요 공간에 대한 음성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함 ○ 안내판과 안내표자판이 화단 안쪽에 비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찾기 매우 어려움 ○ 안내판과 안내표자판은 점자, 음성안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공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나무 이름표는 점자가 표기되지 않아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운동기구에 대한 개별 안내판과 유도블록이 없어, 운동시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음 ○ 자전거, 공원 이용인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공원에 혼자 가기 어려움. 공원 내 안내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 |
| 휠체어 이용인 보호자 | ● 휠체어가 이용하기 편한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함. 안내표시체계가 매우 부족 ○ 공원 내부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어도 진입로에 계단이 있으면 진입이 불가 ○ 운동시설의 높이와 속도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운동공간 필요 ○ 음수대는 휠체어 높이에 맞지 않고, 진입 가능한 공간이 없어 이용할 수 없음 ○ 화장실에서 고정형 손잡이가 아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 ○ 넓고 평평한 산책로가 마련되어 휠체어 이용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 느린 보행자 | ○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가 있는 것이 제일 좋으나, 계단만 있는 곳이라면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음 ○ 산책 중 비가 오면 피하기 어려움. 벤치 근처에 가림막이 있으면 함 ○ 등받이 없는 벤치는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뒤로 넘어가게 됨. 등받이 벤치가 필요함 ○ 장애인의 경우 헬스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위해선 야외 체육시설이 보완되면 좋겠음 ○ 종합안내판에 BF보행로가 표시되고, 곳곳에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음 ○ 장시간 이동 시 다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휠체어 대여 서비스가 꼭 있었으면 함 |
| 휠체어 이용인 | ○ 공원 안내표시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도중 돌아가거나 길을 해매는 경우가 많음(종합안내 판에 BF보행로가 표시되고, 곳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 다목적 화장실이 남/여가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고 비상벨의 위치가 휠체어의 높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정자나 테이블 의자에 잠시 앉아 쉬고 싶어도 계단이 있어 진입이 불가하였음 ○ 운동시설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운동공간 필요함 ○ 경사가 급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잦음 ○ 불필요한 턱이 있을 때 5cm일지라도 무조건 돌아가야 함 |

2 공원 실태조시를 위한 체크리스트 미련

서울시의 걸어서 10분 내의 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지 6인의 시민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인터뷰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서울시의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 인구가 기본적으로 Barrier-Free를 통해 장애물 없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서울 시민(노인, 유아차 이용인, 아동, 다문화) 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6인의 의견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통합 가이드라인을 조합하여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총 40개의 항목 중 18개의 항목에서 시민인터뷰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각 항목 당 1~5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표 3-3] 공원 실태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 평기 | 항목 | 체크 내용 | 비고 |
|--------------|-----------|--|----|
| | | 공원 홈페이지가 있고 웹페이지 상에 BF보행로, 편의 이용 안내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 |
| 공원 이용 | 정보 접근성 | 공원 이용에 필요한 음성 안내기, 휠체어, 유아차 등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다. | 추가 |
| 서비스 (25점) | | 사전 또는 현장에서 공원 이용 서비스(공원 안내, 해설)를 예약, 이용할 수 있다. | 추가 |
| | |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 대피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
| | 안전 체계 |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등 24시간 감시 및 재해 대비를 | |
| | | 갖추고 있다. | |
| | | 공원 입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
| | | 공원 입구의 위치를 알기 쉽게 조성되어 있다. | |
| | | 공원의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 |
| | 공원으로의 | 진입 억제 말뚝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 진입공간 | 접근성 | 공원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를 위한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있다. | 추가 |
| (40점) | | 산책로까지 시각장애인을 유도, 안내시설(바닥 포장재 다양화, 점자 블록, 음성/위치 안내 등)가 있다. | 추가 |
| | | 외부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이 쉽다. | |
| | ステル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찾기 쉽게 안내 및 유도하고 있다. | |
| | 주차장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안전 | |
| | | 한 이동이 기능하다. | |

(표 계속)

| 평기 | | 체크 내용 | 비고 | |
|--------|-----------------|---|-------------|-------------|
|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및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 | |
| | | 설비가 있는 대변기 부스를 선택할 수 있다. | 추가 | |
| | | 대변기 부스에는 위이래로 움직일 수 있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 추가 | |
| 위생 공간 |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 | |
| | _ |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 | |
| (30점) |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고, 충격을 흡수 | | |
| | | 할 수 있는 바닥 재료 및 마감을 사용하였다. | | |
| | | 24시간 방법 및 경보 시스템 등 비상시 쉽게 이용 가능한 안전 설비가 | 추가 | |
| | | 설치되어 있으며, 호출 버튼이 이용 가능한 높이에 있다. | | |
| | | 공원까지 보행 안전 구역에 따르는 유효폭(1.2m)을 확보하고 있다. | 추가 | |
| | |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기능하도록 연속되어 있고 보행 안전 구역의 | | |
| | | 바닥 재질, 색상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 | |
| 이동공간 | | 계단이 있는 곳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의 시작과 끝을 | | |
| (30점) | - | 알 수 있는 표시체계가 있다. | | |
| (00 🖽) | | 공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순환로가 존재한다. | | |
| | |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아차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추가 | |
| | | 공원의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불안감 없이 | 추가 | |
| | | 이동할 수 있다. | | |
| | | 공원 이용에 필요한 음성 안내기, 휠체어, 유아차 등 편의장비를 대여 | 추가 | |
| | 편의시설 | 하고 있다. | | |
| | | 관리사무소, 매표소, 방문자 센터, 매점 등 누구든 출입할 수 있도록 | | |
| | | 조성되어 있다. | | |
| 편의 공간 | | 공원의 입구에서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에 관한 통합 정보를 알기 | 추가 | |
| (30점) | | | | 쉽게 제공하고 있다. |
| | 인내시설 안내시설 | 공원 이용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정보가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고 있다. | 추가 | |
| | 신네서크 | 아이 제공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물 이름표가 제공되고 있다. | 추가 | |
| | |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해 안내하고 다른 | | |
| | |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이간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을 갖추고 있다. | | |
| | |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식재, 형태 등을 갖추고 있다. | | |
| | | 보행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게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휴게시설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 추가 | |
| ᆕ게고기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 | |
| 휴게공간 | |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추가 | |
| 및 |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제공하고 있다. | 추가 | |
| 기타시설 | 기타시설 | 부모나 아동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 | |
| (45점) | (운동기구, |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 | | |
| | (년8711, 놀이사설 |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 | 추가 | |
| | 5) |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 | |
| | <i>o</i>)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보호자가 휴게할 | | |
| | |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 | |

3 공원 실태조사: 강서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공원 실태조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진 걸어서 10 분 내의 공원에 어떤 물리적·환경적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이와 같다.

[표 3-4] 공원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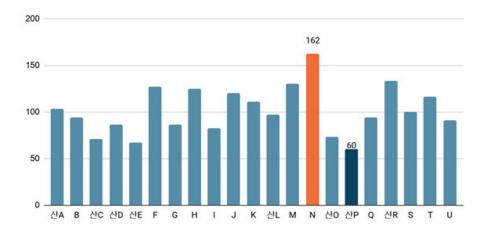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조사대상 | 강서구 근린공원 21개소(미시설 1개소, 평가 불가 1개소 제외) |
| 조사 기간 | 2020년 10월 20일(화) ~ 10월 22일(목) |
| 조사 방법 | 조사자 6인이 2인 1조를 이뤄 체크리스트 표를 토대로 평가 |

1) 공원별 종합 점수

강서구의 근린공원별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하였다. 또한,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같은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있어도 각 공원의 크기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높은 공원과 낮은 공원의 점수 편차가 컸다. 21개소의 평균 점수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공원이 절반 이상(약 57%)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N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넓고 평탄한 산책로, 주요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결,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가장 점수가 낮은 산P공원은 대부분산지로 되어있어 경사가 가파르며, 주요 시설들은 비장애인, 그중에서도 신체 건강한 성인의 이용만 가능해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3-5] 공원별 종합 점수표

| 산A | В | 신C | 산D | 산E | F | G | Н | I | J | K | 샌 | М | N | 신이 | 산P | Q | 샙R | S | Т | U |
|-----|----|----|----|----|-----|----|-----|----|-----|-----|----|-----|-----|----|----|----|-----|-----|-----|----|
| 103 | 97 | 71 | 86 | 67 | 127 | 86 | 125 | 82 | 120 | 111 | 97 | 130 | 162 | 73 | 60 | 94 | 133 | 100 | 116 |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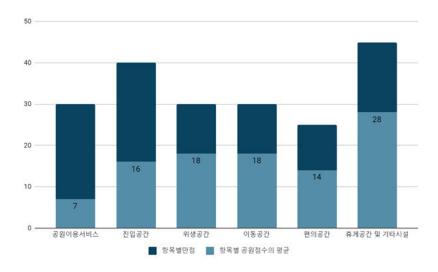
[그림 3-4] 공원별 종합 점수 그래프(산지형 공원은 알파벳 앞에 '산'을 붙임)

2) 항목별 평균 점수 비교

6개의 평가항목별 공원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공원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평가항목은 공원 이용 서비스이다. 해당 항목에서는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원 내 안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모든 공원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안전 체계의 미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에서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 노인, 아동의 경우 이용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동선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다.

편의 공간과 진입공간, 이동공간 항목은 공원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큰 항목이다. 21개소의 공원은 모두 같은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00㎡ ~ 100,000㎡까지 약 10배 이상의 크기 차이를 보여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의 경우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또한, 공원은 평지로 조성되었는지, 산지로 조성되었는지 유형에 따라 산책로나 주차장 설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입공간과 이동공간에서 평가점수가 크게 나뉘었다.

위생 공간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공원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잘 되어있었다. 하지만 비상벨의 위치, 바닥의 재질, 휠체어의 회전반경 등 섬세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항목에서 휴게공간은 공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받은 항목이다. 그러나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시설은 높이와 규격이비장애인과 성인에 맞춰져 있어 누구나를 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항목이다.



[그림 3-5] 항목별 평균 점수 비교

3) 규모별 평균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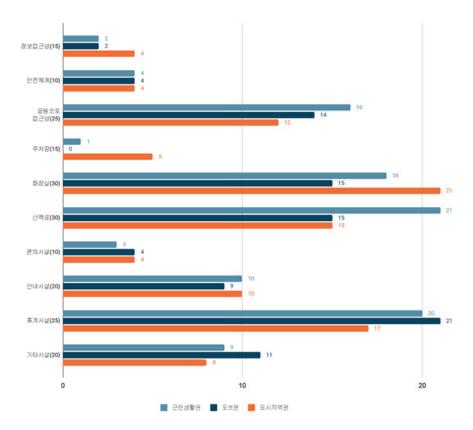
강서구 21개소 근린공원을 도시공원의 설치 및 기준에 따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12개소), 도보권 근린공원(2개소),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7개소)으로 분류하여 공원의 규모에 맞게 비교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공원 구분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 근란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500미터 이하 | 1만 제곱미터 이상 |
|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1천미터 이하 | 3만 제곱미터 이상 |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0만 제곱미터 이상 |

[표 3-7] 규모별 공원 분류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 | | | | | | | 7.5 | :권 공원 |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 | | | | | | | | |
|------------|----|---|---|---|---|---|---|---|-----|-----------|-------------|---|----|----|----|----|---|---|----|----|
| В | 산D | F | G | Η | I | J | М | Q | S | Τ | U | K | 산이 | 산A | 산C | 산E | 샌 | N | 산P | 산R |



[그림 3-6] 규모별 평균 점수 비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 지역권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은 휴게시설과 화장실이다. 휴게시설을 살펴보면 이용인을 포함한 보호자까지 쉴 수 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공원의 규모에 맞게 수량이 충분했다. 대부분 등받이가 있는 벤치를 설치하여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약한 이용인도 편하게 휴식할 수있었다. 또한, 21개소의 공원 중 19개의 공원에 화장실이 있었고 규모에 따른 화장실의수준 차이가 미미했으며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대체로 잘 갖추어졌다.





[그림 3-7] 휴게시설_(좌)근린생활권 벤치 (우)도시지역권 벤치





[그림 3-8] 위생시설 (좌)근린생활권 회장실 (우)도시지역권 회장실

하지만 안전 체계 항목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점수를 얻었지만,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방문자의 수, 공원의 규모가 가장 커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CCTV 사각지대 방지, 자동 심장 충격기(AED)의 설치 등 안전 체계에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림 3-9]처럼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을 현장 조사했을 때 1m 높이의 옹벽 안쪽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아이·허리가 굽은 노인의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다거나, CCTV가 각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익사 사고가발생했음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 많은 방문객에 비해 안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통제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이나 아동에게 매우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어 보도와의 엄격한 분리,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9] 안전 체계_(좌)옹벽 안쪽 비상벨을 설치한 모습 (우)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

주차장 역시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공원에 비해 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15점 만점에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7곳 중 3곳에 주차장이 부재하였으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나머지 공원들은 차량의 통로와 보행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지역권의 한 근린공원에서는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한 나머지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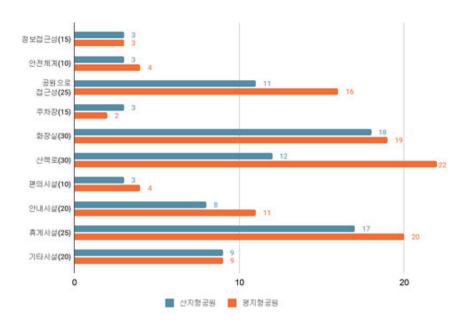
[그림 3-10] 주차장 (좌)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안 되어있는 모습기타시설 (우)성인 남성이 서 있는 높이(180cm)에 딱 맞는 운동시설

기타시설 항목에서는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평가하였는데 세 규모의 공원 모두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실생활에서 매우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요가 높으므로 근린생

활권 근린공원에서 놀이·운동시설에 대해 폭넓은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공원에 같은 수준의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의 현실에 맞게 규모별로 수요 가 높은 공간의 질을 집중적으로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유형별 평균 점수 비교

공원은 산지형/평지형 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평지형 공원은 공원시설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평탄한 지형이 특징이며, 산지형 공원은 산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최소화하고 80~90% 이상을 원래의 '임야, 숲'의 상태로 보전하여 가파른 경사의 지형을 갖는다. 강서구의 근린공원 21개소를 나누어 보았을 때 산지형 공원 8개소, 평지형 공원 13개소로 분류되며 유형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1] 유형별 평균 점수 비교

[표 3-8] 유형별 공원 분류

| | 평지형 공원 | | | | | | | | | | 산지형 공원 | | | | | | | | | |
|---|--------|---|---|---|---|---|---|---|---|---|--------|---|----|----|----|----|---|----|----|----|
| В | F | G | Н | Ι | J | K | М | Ν | Q | S | Т | U | 산A | 산C | 산D | 산E | 샌 | 산이 | 산P | 산R |

[그림 3-11]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지형과 평지형 공원에서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산책로와 공원으로의 접근성이다.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은 산지형 공원은 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산책로는 아이와 노인의 이용을 힘들게 한다. 산지형 공원은 입구와 샛길이 많아 종합안내판과 안내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으면 공원 입구를 한눈에 찾기가 힘들어 공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휴게시설은 계단과 경사를 지난 정상 부근에 위치하여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3-13]에서 보듯 턱을 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화장실, 부족한 조명과 안내 체계 등 산지형 공원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한 듯보였다. 따라서 다른 공간과 시설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산책로와 접근성이 쉽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두 항목의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12] 이동공간 바닥 포장재로 인해 울퉁불퉁한 산책길





[그림 3-13] 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모습

추가적으로 산지형 공원의 안전 체계로 산불 진화보관함과 CCTV만 설치되어 있는데 다양하고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산지의 특성상 8개소 공원 모두 안전 체계가 다소 빈약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산지형 공원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를 했던 '산A'공원은 BF산책로를 일부 구간 조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좀 더 보완한다면 강서구의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산지형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특히 장애인 주차장이 산책로 바로 옆에 위치해 차에서 내린 다음 바로 산책이 가능한 점이 큰 이점이다. 또한, 화장실,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어 응급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핸드레일과 촉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이용까지도 가능한 공간이다. 조사했을 당시에도 산지가 있는 공간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에 방문객이 훨씬 많았다.





[그림 3-14] (좌)산A공원_자연을 보존하며 산책로를 조성한 모습 (우)산A공원 시각장애인 안내 촉지판을 설치한 핸드레일

평지형 공원의 경우, 13곳 중 10곳은 산책로에서 평균 점수(16점) 이상으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넓고 평평한 산책로와 각 시설, 산책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어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3곳 모두 입구에 종합안내판이설치되어 있어 산지형 공원에 비해 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했다.

그러나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보다 공사 및 설치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 과 안내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주요시설 바로 앞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점자 블록을 찾아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불편함이 따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표지판 에는 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비상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BF산책로에 대한 표시가 종합안내판이나 표지판에도 표시된 공원은 13곳 중 1곳 (K공원)으로 나머지 공원은 산책을 하다 장애물이 보이면 돌아가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림 3-15] (좌)비상대피장소이지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모습 (우)산책로에 점자 유도블록이 없는 모습

04. 정책제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반경이 좁혀진 코로나19 사회는 가까운 근린공원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대규모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유원지 성격의 공원에서부터 시작되며, 정작 코로나19 사회에서 중요한 근린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이용이 증가한 공원은 충돌하는 이용 욕구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섯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린공원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생활권 가까운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있어야 하며, 대규모 공원보다는 가깝고 작은 공원 위주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공원 이용시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셋째, 공원 이용 서비스의 확대가 되어야한다. 급변하는 이슈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서울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포용 도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서비스를 한정하고 참여를 제한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질적 개선과 서비스의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 2021년 의무화가 적용되는 공원은 신설되는 공원에 한정되며, 기존에 있는 오래된 공원과 민간공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원의 질 향상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한 시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근린공원에 바라는 미래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1_근린공원의 양적 확대

서울시는 향후 2030년에는 53지구 중심의 근린생활권으로 강화될 것이며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는 '작은 도시, 서울'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걸어서 10분 거리 내의 가까운 공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대형공원 중심의 공원녹지 조성이 아닌 자투리 공간을적극 활용해 녹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표 4-1]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울시 노력의 결과로 소공원의 면적이 2015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에 약 22%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소공원에 비해 근린공원의 증가율은 0.94%로 미미하다. 근린공원 역시 소공원의 증가추세에 따라 함께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가까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표 4-1] 서울시 연도별 공원 면적

단위: 천㎡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체 공원 | 167,938.9 | 168,203.9 | 168,374.6 | 168,843.3 | 168,896.8 |
| 근린공원 | 45,014.6 | 45,192.2 | 45,156.4 | 45,441.7 | 45,438.1 |
| 소공원 | 504 | 511.5 | 517.9 | 563.9 | 616.7 |

2_공원시설의 질적 개선

근린공원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현존하는 공원에도 질적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있는 근린공원들을 먼저 재생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공원 이 용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1)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세심한 배려가 더해져야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성된 공원도 많았으나, [그림 4-1]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가 그렇다. 대부분 의무사항으로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산A공원은 다목적 화장실의 비상벨이 세면대 위쪽에 위치하여 아동이나 휠체어 이용인, 쓰러진 환자의 경우 손이 닿기 어렵다. 산C공원은 다목적 화장실이 잠겨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K공원의 경우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남/여 분리가 안 되어있는 남여공용 화장실이었다. 또한, N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의 화장실은 남/여 점자 안내가 떨어져 있어 '남자'와 '여자' 점자 표시를 찾는 데 한참의시간이 걸린다. 다목적 화장실이 의무화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용인의시각으로 좀 더 섬세한 설계와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4-1] (좌)위생시설_산A공원의 높은 비상벨 위치 (우)위생시설_산C공원의 잠겨있는 다목적 화장실



[그림 4-2] (좌)위생시설_남여공용 다목적 화장실을 사용하는 K공원 (우)위생시설 점자표시의 좋은 예인 N공원

정형화·획일화된 시설 역시 문제이다.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운동시설과 놀이시설 대부분이 비장애인에 맞춰져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재활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의 운동공간이 부재하다. 또한, 운동시설과 놀이시설 모두 점자가 부착된 곳은 21개소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시각장애인 인터뷰 당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비장애인과의 충돌과 안전에 위험이 있어 피한다고 하였는데 장애인과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저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3] 기타시설_장애아동도 이용이 가능한 그네

놀이시설은 최근 서울숲을 비롯하여 무장애 놀이터가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대규모나 유원지 성격의 공원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고 정작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공원에는 변화가 미비하다. 현장조사 중에서 강서구 근린공원 중 유일하게 M공원에 장애아동을 위한 그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누구나 걸어서 10분 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정형화된 시설의 틀을 깨려는 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2) 산지형 공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형 공원을 실태조사 하며 지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숲과 사람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한다. 도시공원은 숲 자체만으로 사람에게 주는 환경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용 편의만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공간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봉호 외(2009)는 산책로 노선은 지형, 식생, 자원을 기준항목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용대상인 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등은 응급 상황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의료상이나 재난, 재해 시 차량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식생은 보전 가치가 중급 이하인 지역으로 경로를 유도하고 인공림, 관목림, 초지등 훼손 식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BF산책로는 시속 3km 이하인 보행 약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최대 두 시간의 보행을 기준으로 편도 3km 이하인 루프형으로 조성하여 일부 구간이라도 숲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표 4-2], [표 4-3]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2] 산지형 공원 산책로 구조 기준

| | 항목 | 권장기준 | 내용 | | | | |
|------------------|-----------|---|---|--|--|--|--|
| L | c선연장 | 3km 이하 루프형(loop type) | 보행 약자의 이동속도 고려 | | | | |
| <u>-</u> | 유효 폭 | 1.8 – 2.0m | 휠체어 교행 및 방향 전환 가능(휠체어 폭 65cm 기준) | | | | |
| | 기울기 | - 종단구배: 표준 5%, 평균 12%, 최대 14% - 횡단구배: 1/30(3.3%) 이하 | - 전동휠체어 등판 각도 한계 약 21%(12°) 참조 - 독립보행 불가능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필수 | | | | |
| | 남 재질 |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시 장애가 없도록 고려 | | | | |
| | <u>휀스</u> | - 좌우 양쪽 설치 - 높이 120cm | 경관 조망 및 자연 관찰 시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 | | | |
| 안 전 시 설 | 손잡이 | 좌우 양쪽 설치높이 85cm, 지름 3.5cm 원형한 가지 재료의 부도체, 매끈한 마감, 시·종점부 30cm 연장 | 교행 보행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 | | |
| | 수평 참 | 30~50m 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 참 필요 | 시설배치 시 휴게시설, 탐방 시설과 연계 | | | | |

[표 4-3] 산지형 공원 산책로 노선배치 기준

| | 필요조건 | 충분조건 |
|----------|---|---|
| 지형 | 종단구배 12% 이하 유지 전동휠체어·유아차 사용, 보호자를 동반한 이용으로 제한하여 최대 종단경사 20%까지 인정 | - 계곡부 다리로 연결, 기울기 유지 - 이용 중인 등산로, 시설지, 나지를 먼저 경로에 반영 - 기존등산로 활용 시 계단, 배수로 등 장애물 제거 |
| 식생 | 녹자연도 등급 7 이하, 비오톱 등급 2 이하 | 인공림, 관목림, 초지 등 훼손 식생 하부 활용 |
| 자원 | 최소 1개소 이상의 원경 조망 기능 | 자연경관, 도시경관, 원경, 근경 등 다양한 조망공간 포함 |
| 응급 대책 | - 의료, 재난, 재해 시 조치를 위한 차량 근접 로 확보 - 목발, 휠체어 이상의 보행 약자는 단독이 용 금지 | -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제고 - 별도 관리소가 없는 경우 상주 관리인 1인 이상 배치 |

해당 기준을 강서구 전체 산지형 공원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대표적인 산지형 공원 2~3곳을 거점으로 하여 집중적인 개선과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면 자연물을 활용한 해설프로그램, 오디오 가이드 제공 등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웹페이지에서 어느 구간까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지,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당사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원 이용 서비스의 확대

(1)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 개선도 이루어져야

공원 이용 서비스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21개소 공원의 웹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4개의 공원은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7개의 공원은 [그림 4-4]에서 보 듯 공원의 역사, 면적, 개원 날짜 등이 명시되어있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인터뷰 당시 많은 장애인이 어떤 길로 이동할지, 어떤 이동 수단을 탈 것인지에 대한 동선을 계획한 후에 외출한다고 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누구나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상에 공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길, 각 구간별 경사도, 시각장애인용 리모컨 작동 여부, 공원 해설 프로그램 진행 여부 등 실질적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페이지의 정보는 공원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 이용에 있어 활용도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소개

영정: 개화산의 원래 이름은 주룡산(莊離山)으로, 신라시대 주룡이라는 짠 도인이 산에 살면서 매년 9월 9일에 동 자 두세 명과 대불어 높은 곳에 울라가 술을 마시며 구일용산음(九日臨山政)이라하여 주룡산이라 불리었다. 도인이 돌아간 후에 그 자리에는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 이를 두고 사람들은 '개화산(開花山)' 이라 불렀다 한 다

면적: 총 386,500㎡

개위 :1997. 7. 9

주요시설: 악사사, 악사사 3층석탑, 미타사, 약수터, 6·25전사자위령탑, 운동시설 등

주요식물: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산빛나무 등



[그림 4-4] 정보 접근성_해당 공원은 무장애 숲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출처: 서울의 산과 공원(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ldx=1362)

현장에서도 정보를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원실태조사 결과 G, H, K, N, 산R공원 등 장애물 없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산책하다 장애물이 보이면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공원의면적이 매우 넓은 경우,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쉽다. 이에 [그림 4-5]처럼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장애물 없는 산책로'에 적용

하여 표시선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쉬운 표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닥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하면 종합안내판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산책하기 편해질 것이다. 다만 '장애물 없는 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진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고속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출처: 네이버 포스트(https://url.kr/EkimCh)

(2) 공원 내 다양한 서비스 필요

김용국·조상규(2019)에 의하면 공원 서비스와 같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는 포용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는 어떤 계층도 소외됨 없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일부 법에서는 물리적 개선이 어려울 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두 차별로 간주한다. 음식점에 접근이 어려우면 테이크아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공간에 물리적 접근이 어렵다면 휠체어를 옮기거나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소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포용도시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선 공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고민이 필요하다. N공원의 경우, 공원의 면적(약 50만㎡)이 매우 넓어서 모든 공간에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서비스로 N공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해 오디오 가이드를 예약하여 사용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넓은 공원에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를 곳곳에 설치하였다. 특히 산지형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개선에 한계

점이 있어서 대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6]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공원의 대체 서비스

출처: 서울관광재단(https://www.seouldanurim.net/attractions/D/TOURINFOTYPE2/34286)

4 지발적 참여 독려 방안 모색

2007년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2015년 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 의무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시공원은 2019년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1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만 의무가 있으며, 기존에 조성된 공원과 민간 소유의 공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추진되면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과 기존 공원 간의 품질 격차가 벌어져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신용호(2018)에 의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하여도,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BF인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 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다양한 유인책 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기조성된 공원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 마련과 정부의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표 4-4]처럼 여러 가지 인 센티브를 확보하고 있는 '녹색인증' 등 여타 인증제도와는 달리 현행제도는 자발적 참여 를 유인할 아무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영속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BF인증 의무화를 앞서 실천하고 있는 건축물은 BF인증 시행 12년만인 올해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 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절한 인센티브에 대해 오랜 시 간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2021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화의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공원 역시 민간부문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향 모색을 지금부터 시 작해야 한다. 다른 인증제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시공비 일부 를 지원해주는 방법, 인증 표창을 수여하는 것, 공원의 홍보를 도모하여 장애인 등을 포 함한 여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4-4] 유사 인증 인센티브 현황

| 인증제도 | 근거 법률 | 인센티브 |
|----------------------|-----------------------|---|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건축기준 완화(9~3%): 용적률, 최대높이 세금감면: 에너지효율등급과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 득세(15~5%), 재산세(10~3%)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기준 완화(9~3%): 용적률, 최대높이 |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기준 완화(15~1%): 용적률, 최대높이 |
| 장수명 주택 인증 | 「주택법」제38조 | 건축기준 완화(100분의 115 미만 범위): 용적률, 건폐율 |

5_시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근린공원에 바라는 미래상 제안

(1) 공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앞서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도시녹지법」은 건축법에 비 해「장애인등편의법」, 'Barrier Free 관련 지침'에 대한 소개가 부재하여 공원을 BF화 를 할 때 법령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공원을 설계하는 조경가가 BF지침을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알더라도 다시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녹지법」 자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위임한다.' 혹은 '~의 기 준에 따른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와 같은 자세한 설계지침도 첨부하여 모법인 「도시녹지법」과 연결되어 확인이 쉽게 해야 한다. 또한, 2021년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어 공원을 설계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위한 설계에 집중할 우려가 크다. 이는 앞선 사례들처럼 화장실에 비상벨을 법정의무에 따라 설치했지만 정작 손이 닿지 않는 위치 에 설치한 것, CCTV를 설치 의무에 맞게 했지만,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의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실제 이용자들을 설계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설계가 아닌 실질적 설계로 공원 이용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시공 후 사후 평가 제도를 시행해 실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설 공사나 규모가 큰 국립공원에서 사후 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 '위 드코로나' 시대의 공원은 생활 반경이 축소되기 때문에 근린공원까지도 적용하여 모범사 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위한 방안

앞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표 4-5]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위한 종합방안

| 頂打 | 녀모 | 개선사항 |
|-------------------|---------------------------|--|
| 평/항목 | | 기12^13 ○ 경사도, BF산책로 구간 표시, 주차장 여부,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 성서도, BF선색도 구간 표시, 주시성 여부,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 웹페이지에서 휠체어, 음성안내기, 유모차 등 편의장비 대여 여부 안내 ○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공원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정보 제공 |
| | 안전 체계 | ○ 공원 입구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닌 사각자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의 확충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 펜스 설치, 소화기 보관함·자동 심장 충격기 (AED) 설치 등을 포함한 공원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 진입공간 | 공원 <u>으로</u> 의 접근성 | ○ 공원을 포함한 공원 주변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 설치 확대 ○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표시뿐만 아나라 규제방안 마련 필요 |
| | 주차장 | ○ 공원 규모/방문자 수에 따라 추가 확충이 필요 ○ 차도와 보도의 영역 구분이 확실해야 함 ○ 산책로 및 공원의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 |
| 위생 공간 | _ | ○ 다목적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 되지 않도록 남/여 분리 ○ '남', '여' 화장실을 한꺼번에 피악할 수 있는 점자 안내, 실효성 있는 비상벨위치 조정 ○ 미끄럼빙지 및 충격 흡수를 위한 바닥 개선 |
| 이동공간 | - | ○ 산지형 공원 - 장애물 없는 산책로 식생 보전 가치가 중급 이하인 구역을 활용하여 일부 구간 조성 - 휴게시설·화장실·주차장과 유기적 연결 - 현실적 여건에 따라 대표적인 산지형 공원 2~3곳 집중개선 및 홍보 - 물리적 여건의 극복이 어려울 시 대체 서비스(공원 해설, 오디오 가이드 대여, 생태프로그램 등) 제공 ○ 평지형 공원 - 점자 유도블록 설치 확대 - 종합안내판, 표지판 등 점자 도입 - 장애물 없는 산책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적용 -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 출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 마련, 규제가 어려울 시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명확한 분리 필요 |
| 편의 공간 | 편의시설 | ○ 공원의 규모와 현실적 여건에 맞는 편의시설 마련 ○ 공원 이용에 필요한 휠체어, 유모차 등의 편의장비 대여 |
| | 안내시설 | ○ 종합안내판, 표지판, 식물 이름표 등 점자 도입 ○ 바상 대피 안내, 소화기 보관함과 같은 안내와 관련된 표지판의 경우 점자 혹은 점자 유도블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 필요 |
|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 휴게시설 | ○ 안전사고 방지 및 이간이용을 위한 조명 설치 구간 확대 ○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설치 자제 ○ 휠체어가 진입 가능한 간격으로 설치 ○ 등받이 벤치로 보완 필요 |
|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이시설 등) | ○ 획일화·규격화되어있는 시설 탈피 ○ 아동, 신체장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강도 운동시설 공간 마련 ○ 비장애 아동의 놀이가 가능하도록 종합놀이 시설 설치 확대 |

(3) 연구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적으로 배려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성 도출까지 연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허

곽정란, 2018. "일본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차별해소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국·조상규, 2019,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김인순·안성준·이영환·이규일·김동영 외 2인, 2015, "Barrier-Free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이영환·박광재·류상오·안성준, 2019, "Barrier Free, 장애인, 노약자도 함께 하는 생활환경",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정현, 20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ADA법과 한국의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행정학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생명의숲, 2020, "코로나19 시대에 심화된 서울시 생활권공원 이용 격차 실태조사와

도시숲 정책 제안 연구", (재)숲과나눔

서울연구원, 2020, 「감염병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은실·구본학, 20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적용한 보라매공원 개선계획", 한국조경학회.

서은실, 2016, "도시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개선 연구", 상명대학교.

성낙일·박용갑, 2015,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서울특별시.

손정수, 2003,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바탕으로 한 환경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신용호, 2018, "BF인증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명화·김정열·장선희·김은하, 2005, "장애인 나눔의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사)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이일호, 2017, "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의무 - 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제9집 제1호". 「국제법무」제9집 제1호, 제주대학교.

최은경, 2010,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원설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파구 오금공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배정희·최인태·유은영, 2006, "보행약자를 위한 도심 산지형 공원 내 산책로 조성계획 연구", 「한국조경학회 2006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조경학회.

https://tmacs.kotsa.or.kr/(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parks.smcgov.org/flood-park(미국 샌머테이오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80023(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https://data.seoul.go.kr/dataList/10052/S/2/datasetView.do(서울시 홈페이지)

https://wis.seoul.go.kr/handicap/tour/route_view.do?returnURL=%2Fhandicap%2Ftour% 2Froute.do%3FbbsType%3D2&seqNo=93(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0/1162(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osaka-park.or.jp/(일본 오이즈미 공원 홈페이지)

http://www.universal-design.co.jp(일본 유니버설디자인·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s://m.blog.naver.com/(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블로그)

김진유, 2020.05.09., "집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 더 중요해질 공간 민주화", 한국일보. 신현보, 2020.10.15., "코로나 이후 공원 나들이객 얼마나 늘었나 보니…세계 1위", 한국경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자료. 2020.10.14.,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 https://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553&linkId=1001456&m enuld=ME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 ry=&contents1=

부록. 강서구 근린공원 21개소 평가점수

1) 산A공원

| 평가형 |]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 정보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 3 |
| 서비스 | 접근성 |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2 |
| 진입공간 | 공원 <u>으로</u> 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 10 |
| (40점) | - BLO |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
| (40 🗗)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1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5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인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6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6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0 |
| 휴게공간 및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4 |
|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7 |
| 총평 | | 강서구 산지형 근린공원의 유일한 무장애숲길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이트에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음 ○ 무장애숲길로 조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가파른 산지형으로 장애인, 유아차 이용인, 어린이의 이용이 힘들 것으로 보임 ○ 주차장, 화장실이 무장애숲길 바로 옆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았음 ○ 화장실의 비상벨이 세면대 옆에 위치해 접근이 매우 불편하며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워 보임 | 103 |

2) B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2 |
| (40점) | 주치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0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8 |
| mol = 71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3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0 |
|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45점) | 휴게시설 | 야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9 |
|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5 |
| 총평 | | ○ 주택인근에 위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산책, 조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주출입구가 없고 자전거도로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시각장애인이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음 ○ (그나마)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걸으면, 장애물을 피해 아늑한 숲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94 |

3) 산C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4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3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0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1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1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0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7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5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0 |
| 총평 | | ○ 산지형 공원으로 정비되지 않은 시설 및 구간이 대부분임. 주출입구의 등산로 경우 일부 포장길이 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아동, 휠체어 이용인은 접근과 이용이 불가해보임 ○ 화장실이 총 2개이며 주출입구에 있는 다목적 화장실은 남녀공용,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음. 산에 있는 화장실은 턱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며 다목적 화장실이 없었음 ○ 비상벨의 위치가 돌담 위에 위치해 선 채로 손을 뻗어도 닿을수 없었으며 비상시 대처가 아예 불가능함 | 71 |

4) 산D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2 |
| (40'a)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_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7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8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2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5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긴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3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빌라촌으로 둘러싸인 공원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음 ○ 산지형 공원으로 휠체어 이동이 불가함. 주출입로들의 연결성이 없음 ○ 실내체육관 인근 출입로를 통해 실외체육관 주변 탄성고무트랙을 활용한 산책, 운동이 가능했음 | 86 |

5) 산E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5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6 |
| (40'3)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가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4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9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0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6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긴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2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2 |
| 총평 | | ○ 산지형 공원이지만 인근에 평지형 공원이 인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체기능할 듯함 ○ 주출입구와 종합안내판이 없어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낮음 ○ 조금이니마 이용하려면 공원 뒤편으로 돌아가서 경사로를 통해 약수터까지 가는 길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 이용이 일부 가능함 | 67 |

6) F공원

| 평가항목 |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5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8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가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6 |
| 이 동공 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3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2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4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복지시설과 연결되어 있음. 주변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으나 폐쇄됨 ○ 일부 단차가 있는 구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어 휠체어와 유아차가 이동하기에 양호함. 다만 어린이 놀이 터와 체육시설은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차된 안내시설은 화장실 밖에 없음 | 127 |

7) G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1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3 |
| 진입공간 (40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9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0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1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0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6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5 |
| 총평 | | ○ 공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식사이트가 전혀 없어 정보공 개 청구를 신청하였음 ○ 아이, 유아차 이용인, 노인, 휠체어 이용인 등 누구나 이용하기 매우 좋은 산책로와 휴게시설이 있었으며, 규모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없었음 ○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 공원의 쾌적성, 이용 편의성에 비해 정보의 질이 낮으며 접근성 이 떨어짐 | 86 |

8) H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0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9 |
| (40台)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_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4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4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5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및 | 휴게시설 | 이건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5 |
| 文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3 |
| 총평 | | ○ G공원과 비슷한 규모,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어 이용하기 매우 양호하지만,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넓고 쾌적한 공원에 비해 점자 유도블록의 설치가 충분하지 않았음 ○ 공원의 쾌적성과 이용 편의성에 비해 정보의 질이 낮음 | 125 |

9) |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7 |
| (40 🗇)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0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0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0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다,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3 |
| 충평 | | ○ 역 앞에 위치하여 접근이 매우 좋았으며 직장인의 휴식공간, 주민의 쉼터 및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어 누구나 이용하기 편했지만, 점자 유도 블록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음 ○ 팔각정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옆에 경사로 설치가 필요함 | 82 |

10) J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3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20 |
| (40台)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_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0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3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5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3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일부 단차가 있는 구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으며 어린이 놀이터 진입에도 단차가 없어 휠체어가 접근하기 양호함. 다만 체육시설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전체적으로 휠체어, 유아차 이용인은 공원을 이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안내시설이 없음 ○ 사전 공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음 | 120 |

11) K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4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6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6 |
| (40%)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9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1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6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8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0 |
| 총평 | | ○ 일부 경사가 기파른 구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어 휠체어와 유아차로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기 충분하였음. 다만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임 ○ 공원 내에 원형광장, 다양한 체육시설, 넉넉한 휴게시설 등 공원을 적극적으로 즐기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부휠체어의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목적 화장실이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이며 전동 휠체어가 회전하기에 다소 좁은 폭임 | 111 |

12) 샌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1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2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7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1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1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9 |
| 휴게공간 및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8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0 |
| 총평 | | ○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주 차장 표시가 없었음 ○ 전체적으로 경사가 있어 휠체어, 유아차 이용인은 공원을 이용 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 다목적 화장실의 변기 바로 옆에 세탁기가 있어 휠체어의 이용 이 불가능함 ○ 운동시설이 공원 최상단에 위치하여 비장애인 성인도 오르기 힘든 곳에 위치 | 97 |

13) M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1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7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7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6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3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6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4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5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8 |
| 총평 | | ○ 종합안내판이 화단 안에 설치되어 접근이 어려움 ○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으며 놀이터 진입에도 단차가 없어 접근이 용이함. 다만 체육시설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화장실의 비상벨이 칸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입구에 1.4m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어린이 놀이터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음 | 130 |

14) N공원

| 평: | 기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25점)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12 |
|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5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7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13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9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6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9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4 |
|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45점)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4 |
|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3 |
| 총평 | | →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모습이 보였으며 실제로도 장애인, 유아차 이용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대체서비소(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해 보임 → 공원 면적이 매우 넓은 만큼 종합안내판 상에 BF보행로 표시가반드시 필요해 보임 악사사고가 있었음에도 펜스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음 음성안내가 가능한 촉자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음성안내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음 | 162 |

15) 산0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25점)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0 |
|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1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1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0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8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2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6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3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산지형 공원으로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깔았지만, 폭이 매우 좁고 경시가 가파르기 때문에 휠체어의 이용이 불가함. 주출입로들의 연결성이 없음 ○ 종합안내판이 화단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내판에 주요시설만표시되어 있어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함 ○ 운동시설이 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인은 이용이불가함 | 74 |

16) 산P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3 |
| (40台)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6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0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2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8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1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이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3 |
| 총평 | | ○ 산지형 공원으로 정비되지 않은 시설 및 구간이 대부분임 ○ 유도블록, 촉지도, 음성안내시설, 식물 이름표는커녕 종합안내 판, 산책로, 안내시설이 매우 미흡함 ○ 특히 진입로를 찾기 어려워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샛길이 많은 데 비해 안내시설이 부족하여 길을 헤매기 쉬움 ○ 화장실은 간이회장실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목적 화장실은 없음 | 60 |

17) Q공원

| - 명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0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1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9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8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0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5 |
|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45점) | 휴게시설 | 야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2 |
|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시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5 |
| 총평 | | 서남환경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 Q공원의 부족한 요소들(편의 시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전공원에 대한 공식 정보가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음 전체적으로 산책로와 이동통로의 폭이 넓고 경사도 평탄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이동이 용이함. 실체로 휠체어 장애인 2인이 이용 중이었음 진입공간에 볼라드가 석재로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화장실, 휴게공간이 구석진 곳에 있어 주변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함 | 94 |

18) 산R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25점)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5 |
|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2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5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8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8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히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0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6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5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2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아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산지형 공원이나 공원 내에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함(원당산 산 책로가 순환형에 완만한 경사로 이용이 가능함) ○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없음 ○ 다목적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으며 비상벨의 위치도 적절함 ○ 전체적으로 산지형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잘 조성되어 있지만, 점자 유도블록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더 보완이 필요함 | 133 |

19) S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25점)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5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8 |
|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5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3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0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3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총평 | | ○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넓고 평평하여 유이차, 휠체어 이용의 이용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의 설치는 부족하였음 ○ 종합안내판이 화단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려움 ○ 화장실 입구에 1.4m 높이의 비상벨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비상시 대처가 어려움 | 123 |

20) T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25점)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4 |
|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7 |
| (40점) | 주차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기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17 |
| 이동공간 (30점) | -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23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3 |
| 휴게공간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22 |
| 및 기타시설 (45점) | 기타시설 (운동기규,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12 |
| 충평 | | 계단이 있는 곳은 핸드레일이 일부만 설치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평평하고 넓어 이용하기 편리함. 다만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움 종합안내판에 무장애길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경사가 다소 가파름 화장실 앞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가 있어 다양한 층이 공원을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공원으로 평소에도 휠체어 이용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116 |

21) U공원

| 평 | 가항목 | 체크내용 | 1~5점 |
|----------------------------|---------------------------|--|------|
| 공원 이용 서비스 | 정보 접근성 | 공원 홈페이지 유무, 편의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지, 공원 이용 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 | 3 |
| (25점) | 안전 체계 | 비상, 대피대처방안 강구 여부, CCTV의 적절한 설치 여부 | 4 |
| 진입공간 (40점) | 공원으로의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진출입 통제 여부, 공원까지 평탄한 접근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유무 | 11 |
| | 주치장 | 차량이동통로와 보행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외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접근 가능 여부 | 0 |
| 위생공간 (30점) | - |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부스 유무, 핸드레일 설치 유무,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유무, 안전설비 설치 유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21 |
| 이동공간 (30점) | _ |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확보 여부, 계단의 핸드레일 설치 유무, 장애물 없는 순환로 설치 유무, 주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 17 |
| | 편의시설 | 편의장비 대여 여부, 출입과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 4 |
| 편의공간 (30점) | 안내시설 | 산책로 및 통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지역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 안내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제공되어 있는지 | 11 |
| 휴게공간 및 기타시설 (45점) | 휴게시설 | 이간이용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이 보행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지, 누구나 쉽게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18 |
| | 기타시설 (운동기구, 놀이사설 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놀이터, 종합시설이 제공되고 있는지 | 2 |
| 총평 | | ○ 공원주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짐 ○ 음수대는 폭이 좁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함 ○ 종합안내판, 점자 유도블록, 음성안내시설 존재하지 않음 | 91 |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9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